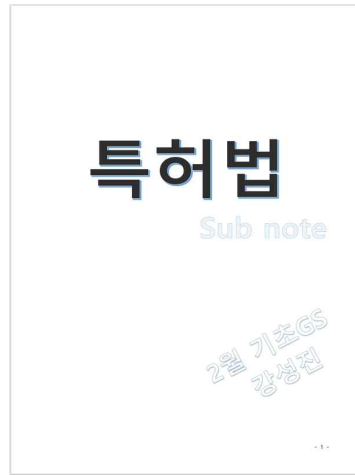


[2월 기초GS 강의계획서]

1. 강사소개



제58기 강성진



서브노트

E-mail : eeroum58@naver.com

2. 강의 목표

- 1)단기간에 특허법 전반에 걸친 중요판례, 이론, 전체적인 흐름을 수험생들께 체득시켜 실력을 극대화함을 목표로 합니다.
- 2)중요논점에 대한 답안작성을 통해 ‘법리-논리구성-사안해결’ 연습을 통해 답안작성 연습을 합니다.

3. 교재_특허법 SubNote

- 1)실질적으로 시험에 필요한 중요판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목차로 현출시키기 편하도록 판례의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PBP청구항의 발명유형- '물건발명']

[1]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PBP청구항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취급]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권리범위 판단대상]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

1) (1)학설

①물건자체설. 물건의 청구항으로 등록된 이상, 등록요건 판단과 같이 물건에 권리범위를 인정한다.

②제법환정설. 물건을 제조방법으로 특정한 것은 출원인의 자유의사에 맡긴 것이고, 보정 기회도 있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조방법에 권리범위가 한정된다.

(2)검토

PBP청구항의 본질은 물건발명에 해당하며, 등록요건 판단대상과 등록 후 권리범위 해석을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바, 원칙적으로 동일성설이 타당하다.

서브노트 구체적 예시

4. 강의계획서

1회	이론수업(발명과특허, 특허요건)	5회	1시간 답안작성 + 이론수업(특허권과 침해, 특허심판)
2회	1시간 답안작성 + 이론수업(특허명세서)	6회	1시간 답안작성 + 이론수업(특허심판)
3회	1시간 답안작성 + 이론수업(이익제도)	7회	1시간 답안작성 + 이론수업(심결취소소송, PCT)
4회	1시간 답안작성 + 이론수업(특허권과 침해)	8회	1시간 답안작성 + 최신판례 등